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4. 1. 24.(수) 10: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 불참위원 : 없음

---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개최하는 첫 대면회의입니다.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입니다만 긴급한 현안 사항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 뉴스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3년도 제44차, 제45차 그리고 2024년도 제1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7. 의결사항

### 가.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 (2024-02-001)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는 방통위는 매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의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친화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적 소재를 발굴하여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제작하고 편성하여 지역방송사와 중앙방송사의 상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방송사와 중앙방송사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과제에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방송설비 개선을 통한 제작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방송설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유통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방송장비전시나 해외 지역방송 방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뉴스 제작과 유통 효율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포털 등 온라인에 보다 쉽게 지역뉴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사가 지난 몇 년간 요구했던 '지역뉴스 아카이브 구축' 기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방송사 그리고 방송기술과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반을 구성하고 아카이브에 대한 소요 예산과 기술사항 그리고 저작권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입니다. 지역방송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역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주시청시간대에 지역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에는 방송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송사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에 대하여는 가점을 상향하고 중앙방송사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방송사와 지역대학 등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디어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방송 종사자가 지역민들에게 프로그램 제작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민과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3은 지역방송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정보를 제공받아서 신속히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난방송 송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과제는 지역방송사들의 요구사항을 제4차 지원계획에 처음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중계설비를 계속 지원하여 재난방송 수신환경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방송 특화기능이 탑재된 TV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나눔버스를 운영하여 도서·산간 지역민들에게도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전략 4는 공공성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우선 지역방송의 우수 콘텐츠 유통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방송 콘텐츠를 OTT 등 새로운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콘텐츠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지원 진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위하여 번역, 자막 등 콘텐츠 재제작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과

제입니다. 지역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협찬고지와 관련한 규제완화 시에는 지역방송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송사의 광고배분에 대하여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추진전략 4 공공성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 중에서 두 번째 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의 협찬고지 규제 부분은 여러 번 검토가 되고, 또 지역방송에서 계속 그 부분을 완화시켜 달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 좌미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정책과와 협의하였는데 올해 방송광고정책과에서 규제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협찬고지와 관련된 규제는 개선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역방송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 방송법상 가상광고, 간접광고, 자막광고에 대해서는 크기를 규제하고 있는데, 크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광고규제 개선 전반에 대해서 광고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올해 내에 그것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각종 규제개선 과정에서 지역방송사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광고정책과와 협의해서 지역방송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에 보면 1차, 2차, 3차 지원계획에서 결국 상당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정해 왔지만 1, 2, 3차, 또 이번에 4차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중앙-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 좌미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상생협의체는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 좌미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구상하는 내용은

지역방송사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역방송사들이 지역에서만 광고를 하거나 프로그램 편성해서 실제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기 때문에 조금전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도 물론 확대할 필요가 있고, 중앙방송사와도 공동제작해서 중앙방송에 지역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광고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들을 참고해서 우선 공동제작과 편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생각이고 그리고 광고배분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방송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물론 지역방송사 간 협의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주관이 되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중앙방송사들이 조금 더 지역방송에 대해서 협력과제를 같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아직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좌미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역방송사들은 5년 정도부터 뉴스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해 왔던 사항이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당장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다만 아카이브 구축 여부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버 구축이나 제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방송사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방송기술과 관련된 분들, 특히 콘텐츠 같은 경우 방송사들이 대부분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협회와도 방송사들이 협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다 물었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은 지역미디어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광고, 편성, 장애인방송 그리고 재난방송 등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맡고 있는 각 부서들에서는 지역방송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광고규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방송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시로 지역방송사와 소통하면서 더 좋은 의제들이 있다면 이를 발굴하고, 또 조금전에도 지적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위원장님 저도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저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뉴스와 재난정보, 지역 현안과 지역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언론매체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주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미디어 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지역방송이 존립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2014년도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되어서 1차부터 3차까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역방송의 위기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제4차 지원계획은 종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계속 수행 및 확대 과제를 선별하고 동시에 신규수행 과제를 발굴해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방송사,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무엇보다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뒀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계획의 신규과제인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간 연계, 협업을 위한 중앙-지역방송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두 번째 지역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 세 번째 뉴스 자료화면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추진 등은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및 공적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45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된 가운데 지역방송 예산이 그나마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점을 보면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정된 예산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방송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개선 부분도 지역맞춤형 특화전략을 마련해서 생존을 위한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역방송에서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통해서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지원계획을 추진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2024-02-002)

###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나>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규정’을 개선하여 신고 및 삭제요청 기관·단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물 신고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듬해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와 확대방안을 논의하였고, 2023년 11월 30일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2023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사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5개 부문 모두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개정내용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조건을 「성폭력방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상담소 중 여가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5 제1항 제3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6>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검토결과입니다. 신고·삭제요청 기관에 「가정폭력방지법」 제14조에 따른 통합상담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검토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상의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 상의 상담소를 통합하여 설치한 통합상담소가 2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월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월 중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으로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그 기관·단체가 확대됨으로써 불법촬영물 등이 신속 삭제·차단이 가능해져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요청 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확대 방안 관련 논의를 통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사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거치고 관계부처의 의견도 반영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가 확대되어 불법촬영물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얼마 전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지요?

○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 문구에...

○ 김홍일 위원장

- 개정안 제일 끝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예.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더 논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회의인데 그동안 준비해 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또 뒤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8.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7분 폐회 】